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. 6. 8 선고 2022가단7351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5. 4.

판 결 선 고 2022. 6. 8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18. 2. 13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8. 2. 14. 접수 제13458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원고는 2004. 3. 22. 주식회사 D에 10억 원(지연이자율 연 15%)을 대여하였고, C는 그 채무에 관하여 13억 원을 한도로 근보증을 하였다.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대여금 725,517,87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(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092, 확정),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위 근보증한도액 13억 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다시 받았다(같은 법원 2019차전324, 확정).

나.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2018. 2. 13.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(이하 ‘이 사건 증여계약’이라 한다), 같은 달 14.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(이하 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’라 한다)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~6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(대법원 1998. 5. 12. 선고 97다57320 판결, 2006. 5. 11.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),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.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 박광민

별지